

연수 경비의 반납액 산정기준표(제17조제1항 관련)

구 분 \ 기 준	반납액
1.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	연수 경비 전액
2. 제1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	$\text{연수 경비} \times \frac{1}{2}$
3. 제1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	$\text{연수 경비} \times \frac{\text{의무복무 개월 수} - \text{근무 개월 수}}{\text{의무복무 개월 수}}$

비고

- 1. 의무복무 개월 수 및 근무 개월 수를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.
- 2. 국외 연수를 위하여 받은 외화로 표시된 연수 경비는 반납고지서 발급일의 현찰 매도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.
- 3. 위 표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시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추가 반납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.

$$\text{추가 반납액} = \text{연수 경비} \times \frac{1}{2} \times \frac{\text{의무복무 개월 수} - \text{근무 개월 수}}{\text{의무복무 개월 수}}$$